

부 록

-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증개정조례안
- 현지답사계획('94추진각종주요사업)
-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내역

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"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"를 사
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
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
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
여 실시한다"로 한다.

제9조 제1항중 "그 보조기관의"를 관계공무원
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" 로 하고 "늦
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
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"을 그 해당 일 3일
전까지로 하며 동조에 제3항과 제 4항을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공무원
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
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
이유서를 출석.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
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
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, 참고인이 출 석할
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

지를 첨부하여야 하며, 증인 또는 참고인은
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
할 수 있다.

제9조의 2 및 제9조의 3, 제9조의 5를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 2 (국가사무 또는 도사무에 대한 감사
방법)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
가사무 또는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
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
용한다.

제9조의 3 (증인선서) ① 위원장이 증인에게
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
고, 선서하기 전에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
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, 증인에게
알리는 선서의 취지는 별표1의 증인에 대
한 사전 안내문에 준하고 선서는 별표2 또
는 별표3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
다.

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
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의 4 (증인의 보호) ① 의회에서 증인.진
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.보도등에
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
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
는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.
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공
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회에서 증인.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
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
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9조의 5 (증인등의 실비변상) ① 제9조 제1
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.
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
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
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비와 여비 (운

임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)를 지급하며,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(여비정액표 등급 제3호)를 준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서산군의회의원.
2. 서산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및 서산군 공무원.
3. 허위로 증언·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.

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7조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 (과태료 부과)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8조 (고발)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. 이때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1

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(조례 제9조의 3관련)

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

만약,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별표2

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(조례9조의 3관련)

선 서

본인 서산군의회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와 관련하여 ○○○○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
주민등록번호
성 명

㉠

별표2

피감사 공무원 선서문(조례 제9조의 3관련)

선 서

본인 서산군의회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와 관련하여 ○○○○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
주민등록번호
성 명

㉠